

대한국제법 학회
1999년도 제2차 학술세미나

SAg.d.1

인권위원회 제도의 법적 검토

일 시 : 1999년 5월 8일(토) 오후 2시

장 소 : 대한적십자사 4층 강당

◆ 資 料

1. 법무부, 人權法(案)의 주요내용
-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
2. 人權法案
3. 광노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의 '인권법안'
- '파리원칙'과 '핸드북'을 중심으로

<별첨>

4. 홍성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법 실천

『人權法(案)』의 주요내용

-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

1999. 4.

法 務 部

목 차

I. 인권법 제정 추진경과	1
II. 인권법 제정의 의의	2
III. 쟁점사항과 최종 수정안	3
1. 인권위를 국가기관(정부기구)으로 할 것인가, 반관 반민적 성격의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3
2. 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가, 독립기구 인가	5
3. 인권위의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아니한가	9
4. 인권위의 권한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구제 하기에 충분한가	12
붙임 1) 인권위원회의 업무	
2) 인권위의 조사와 구제절차	

I. 인권법 제정 추진경과

- 政府는 3. 30.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인권법(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안을 확정 하였음
- 法務部는 대통령선거공약이며 신정부 100대 정책과제인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98. 4.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법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였음
- 그 후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등 여러 외국의 인권관계법 및 인권위의 운영실태를 연구·분석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20여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등과의 토론회·간담회와 6차례에 걸친 국민회의·자민련과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이른 것임
- 인권법안은 4월초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II. 인권법 제정의 의의

- 우리나라는 그동안 秩序維持에 중점을 둔 나머지 人權保障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의문사사건」등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事件을 經驗하였음.
- 이제 秩序와 人權이 함께 존중되는 先進民主社會를 指向함에 있어서 人權에 관한 基本法이 制定될 시기에 이르렀고,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人權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民間監視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인권침해행위중 「差別行爲」에 대하여는 男女僱傭平等法 등 개별법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差別行爲에 대한 概念規定과 차별행위의 禁止·救濟를 새로이 規定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人權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감시·구제, 그리고 差別行爲에 대한 禁止·救濟를 規定하고, 國家의 人權保障機能에 虛點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監視·救濟·補完할 「國民人權委員會」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임.

III. 쟁점사항과 최종 수정안

1. 인권위를 국가기관(정부기구)으로 할 것인가, 반관반민적 성격의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인권위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기관 형태로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권력형 인권침해사건은 사각지대에 묻히기 쉽고 고위공직자등 공무원 대량 증원으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도 역행하는 반면, 민간기구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면 정부간섭없이 자유롭게 인권구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UN권고안과도 부합함

① 국가기관 형태로 하면 권력형 인권침해의 방지·구제에 한계가 있음

-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성격상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집권층의 권력형 인권침해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

※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의문사 사건」 등은 군사정부 때 집권층의 권력형 인권침해 사건임

- 인권위를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국가권력기구로 설치할 경우에는 또다른 민간감시기구가 필요할 것임

- 현 대통령은 세계적 인권지도자이나, 인권위원회는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에까지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항구적 제도이므로,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 민간기구 형태가 바람직 함

※ 이 점에 관하여 국가기구를 신뢰하고 민간기구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제도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토마스제퍼슨의 말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임.

"Confidence is everywhere the parent of despotism - free government is founded in jealousy, and not in confidence"

- Thomas Jefferson

②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고위공직자 등 공무원 대량 증원으로 현 정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고위직 포함 최소한 100명 가량의 공무원이 필요하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됨

③ 독립법인 형태가 UN 권고안에 부합하고, 外國의 경험상 보다 효율적임이 입증됨

- UN 권고안은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인권존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인권위는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separate and distinct legal personality)을 부여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함(UN 권고안 문단 299 및 70)
- UN으로부터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의 인권위는 모두 독립 법인형태인 반면 국가기관 형태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실패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음

2. 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가, 독립기구인가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연락은 필요하나,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함. 즉, 인사, 예산 및 운영의 모든 면에서 법무부의 통제·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기구임

① 인사의 독립성

○ 위원회 임명 및 임기

- 인권위원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여 임명

- 여성위원 3인 이상 임명
- 인권위원의 임기 3년은 법률로 보장(1회 연임가능). 다만, 최초의 인권위원중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의 임기는 2년
- 위원장이 자체 직원인사권 보유
 - 사무총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
- 위원 및 직원의 신분보장
 - 형의 선고,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않는 한 의사에 반하여 면직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함(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

② 예산의 독립성

- 법무부의 예산심사권 배제
 - 예산은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
 - 법무부는 예산안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첨부할 수 없고, 그대로 예산당국에 제출
-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의 관여 배제
 - 인권위의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법무부 간섭을 배제

③ 운영의 독립성

- 위원회는 어떤 정부기구의 감독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명문으로 규정
- 민법상 재단법인 관련규정의 준용배제
 - 인권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관련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의 일반적 감독권을 차단
- 정관변경의 자율성
 - 정관변경을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부의 관여를 배제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권한 보장

-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등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권고등의 사후 통보, 연례보고서 제출

-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등의 권고, 의견표명, 고발, 수사의퇴를 한 경우와 권고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조치결과등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후 통보
-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참고사항 - 주무부처에 대한 통보규정에 관하여 >

- 외국 인권위의 경우도 인권주무부서인 법무부에 권고등과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등)
- UN권고안에서도 인권위와 국가간의 연계를 예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내 인권기구는 필연적으로 국가와의 연계 및 입법상의 직무권한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UN권고안 문단 68).

“Independence for a national institution can never mean a total lack of connection to the State..... The founding law of a national institution will identify specific links with the State and define the limits within which the institution is to function. All institutions are necessarily restricted by their links with the State and by the need to conform to their legislative mandates.”

3. 인권위의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아니한가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수사기관등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유형을 모두 조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등이 아닌 정부기관 공무원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차별행위 전반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범위가 결코 협소한 것이 아님

○ 인권위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A. 수사기관등에서의 인권침해행위 : 搜查機關등의 직원(검찰·경찰·國情院·교정기관·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헌병·기무부대의 군인·군무원) 또는 정신병원등 多數人保護施設의 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不法으로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등 押收·搜索하는 행위
- ③ 우편물의 檢閱, 전기통신의 監聽 또는 타인간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 ④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秘密을 漏泄하는 행위
- ⑤ 拘禁·保護施設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法令上 根據없이 懲戒·懲罰하는 행위
- *⑥ 사람에게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⑦ 사람을 공연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유발하는 행위
- ⑧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B. 수사기관등의 직원과 共犯인 자의 위 제①~⑧항에 해당하는 행위

C. 수사기관등의 직원이 아닌 정부기관 공무원의 위 제⑥항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공범자의 위 제⑥항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이 경우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D. 차별행위

▲ 차별행위 : 性別, 人種, 宗教, 政治的 見解, 心身의 障礙, 出身地域 등에 기하여 雇傭, 財貨·서비스의 제공, 交通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의 이용에 있어서 合理的인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들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하고 이를 금지함

▲ 인종모욕 : 인종, 피부색등을 이유로 타인을 경멸, 조롱함으로써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인종모욕을 인종등에 기한 차별행위로 봄

▲ 성희롱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성희롱(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을 성별에 기한 차별행위로 봄

< 참고사항 >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外國의 입법례도 人種侮辱, 性戲弄을 특수한 유형의 差別行爲로 보아 人權委의 조사대상으로 함

○ 행위유형을 이상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여부 결정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UN권고안(문단 225, 228)에서도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정의 내용, 즉 행위유형을 규정하려고 권고하고 있음.

"A complaints mechanism should clearly define the subject-matter of admissible complaints, i.e. the type of action which can be the basis for complaint In all cases, the subject-matter of admissible complaints should be specified as precisely as possible, avoiding a vaguely worded mandate or a mandate subject to excessively broad interpretation. "

4. 인권위의 권한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구제하기에 충분한가

인권위는 관계인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실지조사권 등 다양한 조사권한과 직권조사권을 보유하며, 조사방해 내지 불응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제조치 권고등 처리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등 그 실효성 확보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 인권위의 조사권

- 진술서제출요구권, 관계인출석요구권, 진술청취권, 감정인지정권, 감정의뢰권, 자료·물건의 제출요구권,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권
- 실지조사권(현장조사권), 실지조사시 관계인진술청취권, 실지조사시 자료·물건제출요구권과 제출된 자료등의 영치권

○ 제3자 진정과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

- 인권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피해자 뿐 아니라 인권단체등 제3자의 진정도 허용
-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인권위 職權으로 조사개시 가능

○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권

- 인권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외국인보호소, 군교도소와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하여 인권위원이 시찰
- 시찰시 수용자나 피보호자 면담 가능

○ 구제조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참고사항 - 시정명령권에 관하여 >

- 외국의 경우에도 인권위는 시정권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정명령권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음. 다만, 뉴질랜드, 캐나다의 인권위는 조정에 실패한 경우 인권특별법원(Tribunal)에 제소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손해배상등의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위 인권특별법원은 사법부 소속으로서 인권위와는 별개의 기구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각기 고유의 전문행정분야(독점규제와 공정거래분야, 노동분야)에서의 행정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위(특히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로서 그 성질상 행정의 거의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의 경우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행사를 대행하는 것이 됨
- UN권고안(문단 50) 에서도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It is not common for a human rights commission to be granted authority to impose a legally binding outcome on parties to a complaint."

- 또한 UN권고안(문단 91, 220)은 인권위는 기존 국가기관과 경합(competes)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complement)하는 방법으로 설립해야 하며, 그 조사기능은 기존 사법제도에 대하여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것이라고 함.

"The new institution should therefore be structured in such a way as to complement existing bodies, not to compete with them. The ability of a national institution to receive and act on complaints should therefore be seen as an additional measure of security-a complementary mechanism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all citizens are fully protected."

○ 그 이외 여러 가지 구제방법

- ① 긴급구제조치권고 : 회복 곤란한 피해발생 우려시 인권침해 중지, 피진정인의 직무배제등 권고

- ② 조정 : 원상회복, 손해배상등에 관한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 ③ 법률구조 : 조정 불성립시 법률구조공단등에 법률구조요청
- ④ 고발 또는 수사의뢰 :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거나 본격적 수사가 필요한 경우
- ⑤ 관계 법령·제도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조사과정에서 법령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관계기관에의 이송 :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적절한 관계기관에 이송
- ⑦ 진정의 각하 : 진정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조사가능),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 ⑧ 진정의 기각 :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조사의 한계

- 인권위의 자료제출요구 또는 실지조사시 i)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ii) 수사·재판·형집행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면 진행중인 범죄수사·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자의 명예·사생활 비밀·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자료 또는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인권위는 관계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 인권법안 상의 이와같은 제한의 범위는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비공개 사유보다 훨씬 협소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의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을 포함하여 크게 8가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최소한도 이상과 같은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호주 인권위의 경우는 이상의 경우 이외에도 연방장관과 주장관간의 교섭 내용, 내각에서의 심의내용, 형집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까지 자료제출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인권위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① 刑事處罰

- ▲ 人權擁護業務妨害 : 인권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여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陳情書作成등 妨害 : 교도소등 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陳情書 作成을 不許하거나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② 過怠料 부과

- 아래의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不應한 자
 - ▲ 위원회의 자료·물건제출 요구에 不應하거나 虛僞의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 ▲ 위원회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視察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위원회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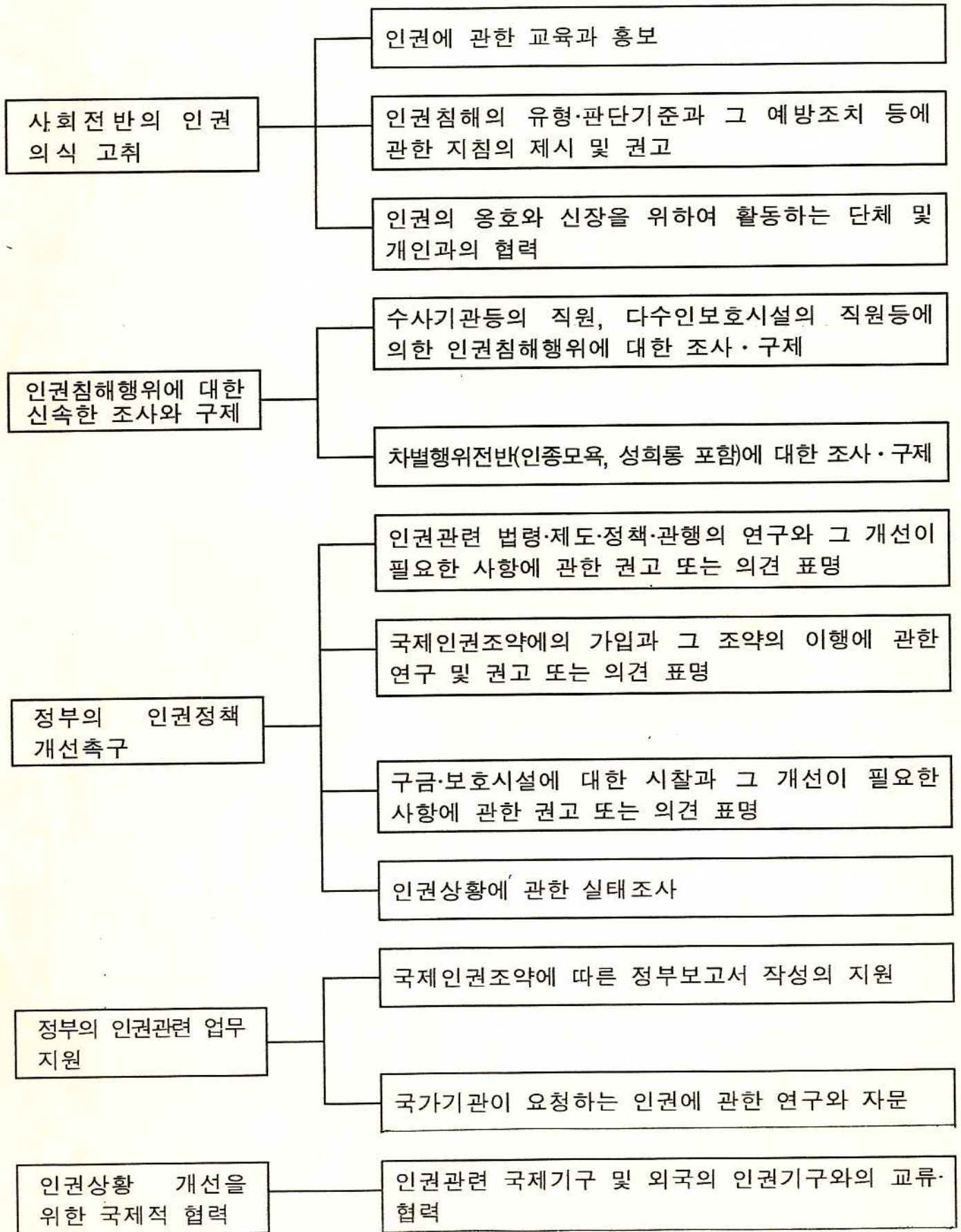
③ 國家機關등의 協力義務

-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성실협조의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 인권위 권고에 대한 30일 이내 조치결과등 통보의무(긴급구제 조치권고의 경우는 48시간내 통보의무), 권고 불수용시 그 정당한 이유 설명의무 등을 인권법에 明文으로 규정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공무원등 파견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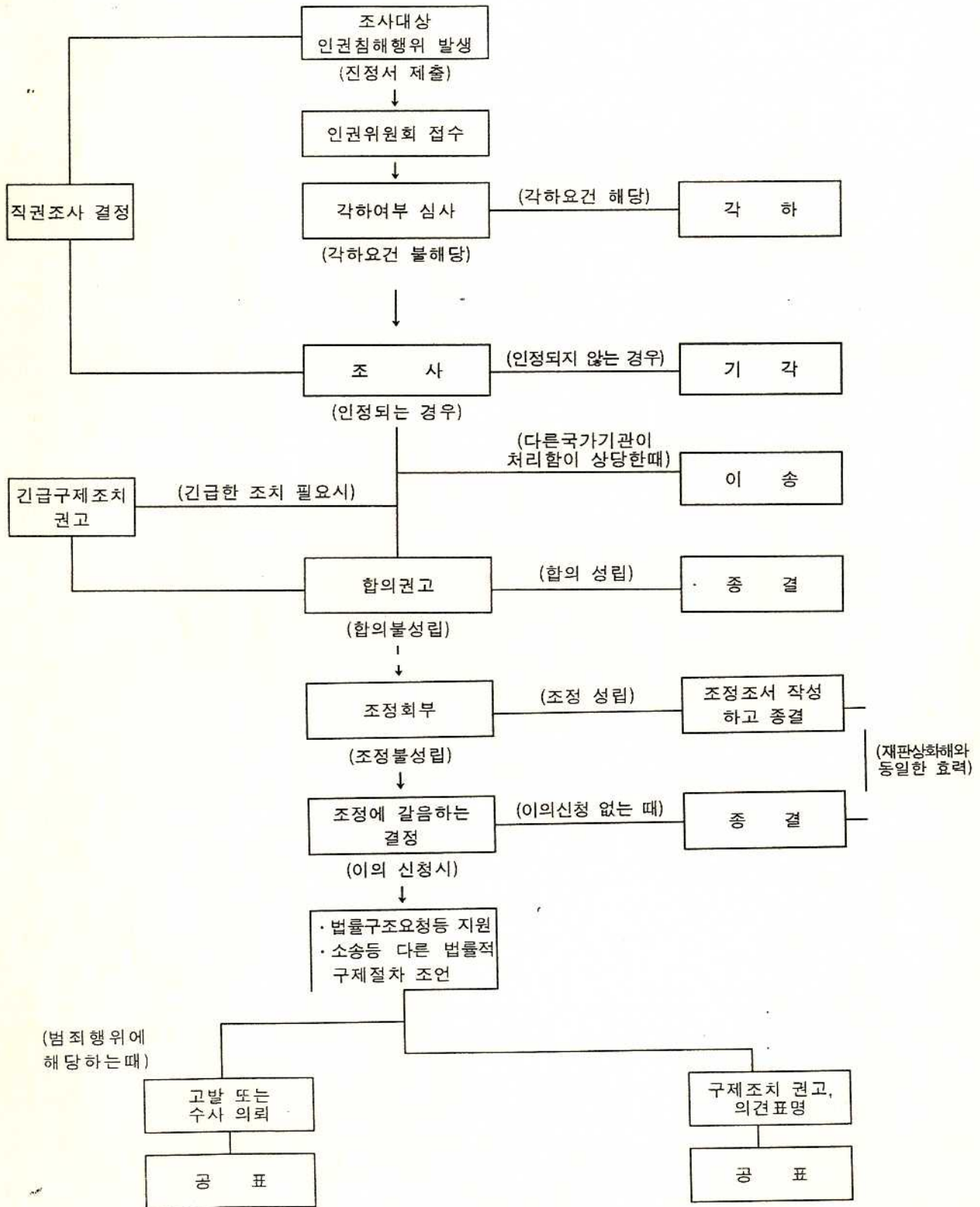
④ 권고등의 公表와 國民 輿論

-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국가기관이 거부할 경우 인권위는 이를公表할 수 있고, 그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국민여론의 비난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효과 있음(외국 인권위 경험상 입증됨)

인권 위원 회의 업무



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절차



人權法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방지·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 ①이 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意識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
3. 人權侵害에 대한 신속한 調査와 救濟
4.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機關의 活動을 監視·補完한다.

第3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자유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 등”이라 함은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을 말한다.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라 함은 檢察·警察·國家情報院·矯正機關 등·保護觀察所 및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에서 規定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을 말한다.
4.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보호·收容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矯正機關 등·外國人保護所·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및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第4條(적용범위) 이 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國家機關의 人權保障 義務와 役割

第5條(國家機關의 義務) 모든 國家機關은 法令의 制定과 改正 및 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執行過程에서 개인의 人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法務部の 役割)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政府의 綜合計劃 수립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지원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②法務部長官은 매년 6月 30日까지 國民人權委員會의 권고·告發 및 搜查依賴와 이에 대한 國家機關 등의 措置結果 등을 綜合하여 人權狀況을 分析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關係中央行政機關 등의 役割)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에의 참가,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初·中等教育法에 의한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障礙人·老人·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雇傭의 촉진과 勤勞條件의 향상을 통하여 勤勞者의 人權을 伸張하도록 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차별행위를 豫防하고 개선하는 活動을 통하여 女性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기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3章 차별행위의 금지

第8條(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出產 또는 妊娠을 포함한 다), 宗教, 年齡, 障礙,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등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특정인(특정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優待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모집, 採用, 教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외의 金品 지급,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인(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인(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인(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第9條(人種侮辱)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

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10條(性戲弄)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에 規定한 性戲弄은 性別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4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1條(設立)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人權侵害를 調査·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12條(獨立性) ①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委員會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3條(事務所) ①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4條(定款) ①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所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在籍 人權委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第15條(登記) ①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6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에 관한 敎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立法過程중에 있는 法令案을 포함한다)·制度·政策·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3. 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차별행위에 대한 調査와 救濟
5.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의 지원
6.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및 그 條約의 이행에 관한 研究와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7.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8.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9.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査
10. 人權侵害의 類型·判斷基準 및 그 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11.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12.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協力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17條(拘禁·保護施設의 視察) ①委員會는 人權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6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禁·保護施設을 視察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表明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施設의 長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18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委員會는 第16條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第19條(권고 등의 相對方 및 권고에 대한 尊重義務) ①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은 관계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20條(年例報告書 등) ①委員會는 매년 3月 31日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會에 보고하고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例報告書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特別報告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組織 및 운영

第21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人權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의 委員은 이를 常任으로 한다.

②委員은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이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委員중 3人은 國會議長이 推薦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중 3人 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委員을 推薦함에 있어서는 各 女性이 포함되도록 하고, 各 常任委員 1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⑦委員長 및 委員이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22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변경, 豫算 및 決算, 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産의 취득·처분 및 변경 등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第17條第3項, 第28條第2項 但書, 第29條第4項, 第40條第3號 但書, 第44條第1項 第1號 但書 및 第6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3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그 會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長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는 常任委員은 그의 이익과 委員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委員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常任委員이 委員會를 代表한다.

第2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5條(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②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26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擱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刑의 宣告, 懲戒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27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委員會의 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지명하는 者가 會議를 主宰한다.

第28條(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當事者(陳情人·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長은 當事者의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決定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29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命한다.

⑤事務總長은 委員長의 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소속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0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종류 및 효력 기타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1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32條(資格詐稱의 금지)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秘密漏泄의 금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業務處理중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유사명칭사용의 금지)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5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장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6條(委員會의 組織·운영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國家의 지원 등

第37條(公務員 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出捐金の 교부) ①國家는 委員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を 交부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매년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の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財産의 寄附)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委員會의 施設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받은 財産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第5章 調査와 救濟의 節次

第40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행위(이하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행위
 -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행위
 -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 바. 사람에게 대하여 暴行·脅迫·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관계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행위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第1號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公務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委員會가 在籍委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4.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차별행위

第41條(陳情人의 適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2條(陳情의 方式)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취지와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

第43條(拘禁·保護施設 收容者 등의 陳情權 보장) ①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보호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禁·保護施設의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書의 작성을 허용한 職員은 그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を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4條(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당해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취하한 경우
7. 陳情의 취지가 당해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반하는 경우
8.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과 동일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査나 國政調査,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査院의 監査,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査, 女性特別委員會의 男女差別事項 調査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9. 委員會가 棄却한 陳情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陳情한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査를 開始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5條(調査의 開始) ①委員會는 陳情이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6條(調査의 目的) ①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機能遂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干渉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調査의 方法) ①委員會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제출요구
2.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聽取
3.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의뢰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團體 등에 대한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取

②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이나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陳述을 聽取하게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地調査를 받는 機關·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을 領置할 수 있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당해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8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47條第1項第4號, 同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물건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1. 公開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중 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물건으로서 公開하면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진행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9條(陳情의 移送) ①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機關은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0條(調査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의 사유로 調査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중지할 수 있다.

第51條(緊急救濟措置의 권고)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

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52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過程中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53條(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陳情을 調停에 회부할 수 있다.

②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 ①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동일 또는 유사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재발방지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 ④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⑤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이내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5條(調停의 효력) ①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한 경우 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6條(法律救助) ①委員會는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기타 機關에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救濟措置 등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고 救濟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4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58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9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의뢰할 수 있다.

第60條(意見陳述機會의 부여) ①委員會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권고,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61條(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第4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중지,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濟措置의 권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要請,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2條(調査 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3條(권고 등의公表) ①委員會는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罪名·搜查機關名·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 등을 公表하는 경우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개인의 姓名을 匿名으로 하는 등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4條(措置結果 등의 通告) ①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7條第1項·第2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권고,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소속 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권고·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1條第1項,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告함에 있어서 委員會의 권고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正當한 이유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65條(法務部長官에 대한 通告) 委員會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변경,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通告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務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第66條(職權調査의 경우 準用規定) 第46條 내지 第57條, 第59條 내지 第65條의 規定은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7條(調査·處理節次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調査 및 處理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章 罰則

第68條(人權擁護業務妨害)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는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을 暴行 또는 脅迫한 者
2.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그 業務상의 행위를 強要 또는 沮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
3. 偽計로써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

第69條(虛偽陳情) 허위의 사실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0條(陳情書 작성 등 방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を 委員會에 송부하지 아니한 者

第71條(人權委員 등 資格詐稱)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2條(秘密漏泄)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處理중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73條(賂物罪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4條(政治關與禁止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및 第84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大統領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6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추천으로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

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設立 당시 任命하는 委員중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常任委員 1人과 國會議長 및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非常任委員 各 1人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본 정부의 '인권법안' - '파리원칙'과 '핸드북'을 중심으로 -

곽노현(방송대, 법학)

1. 머리말

인권위원회 논의가 진행되어온 지난 몇 달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해왔다. 이때의 국제기준이란 다름 아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이하 파리원칙)과 그 공식해설서 격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강화에 관한 핸드북'("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핸드북)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부의 인권법안을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권고에 비추어 검토하는 데 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의 일반적 특징과 유형을 개관하고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한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정부의 인권법안을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기준과 권고에 대비하여 분석, 비판한다.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특징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인권법시대의 독특한 국가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첫째, 인권만을 대상으로 그 보호와 향상만을 유일한 존재 목적으로 삼는 국가기구다. 다른 국가기구의 경우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인권 보장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반면 국가인권기구는 직접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예컨대 인권 외의 권리도 관할대상으로 삼는 법원과 구별된다. 다음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갖는 종합적 국가기구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 외에도 조사연구, 대정부 자문조언, 교육홍보를 통한 사전적 예방기능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반면 예컨대 법무부는 권리구제기능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성공적 운영의 관건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관점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 자칫 부담을 느끼기 쉬운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활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특이한 국가기구다. 끝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국민국가의 한 기관이지만 국내 실정법보다는 국제인권법을 활동기반으로 삼는 특이한 국가기관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법체계와 법문화에 보다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법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이 국가인권기구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국가인권기구가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의 특징은 국민국가의 국가기관이면서도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기구와 국민국가, 그리고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인권의 이름으로 매개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국제인권법 시대의 독특한 국가기관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3. 국가인권기구의 세 가지 유형과 민주화 이행기 입법례의 특징

국가인권기구는 크게 선진국형, 후진국형, 이행기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현실의 선진국형은 차별행위만을 관할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원주민과 이민자 등 일부 주변부 국민에 대한 차별은 있을지언정 중심부 국민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선진국 나름의 자신감 혹은 오만이 반영된 결과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나라의 인권기구는 국제인권규약의 발효 시점을 전후하여 논의가 시작되어 각각 1977년, 80년, 83년에 설치되었다. 이들 나라의 인권기구는 차별행위만을 다룰 뿐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이행기 국가나 후진국의 전범이 될 수 없다.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이들 나라만이 정식 국가인권기구를 두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각종 차별금지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다 지역인권기구에 가입해 있고 민주복지국가의 전통이 굳건하기 때문에 인권기구에 대한 별다른 수요가 없는 듯하다.

한편 후진국형은 인도, 인도네시아 인권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데 국내외적

으로 인권외교용, 국가홍보용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턱없이 작은 조직과 인원, 예산 등으로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해 시민사회에서 가시성이 약한 것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인권기구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시늉만 내는 후진국형 인권기구를 이른바 알리바이 인권기구라 부른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은 기본적으로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인권기구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이행기형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물러남으로써 민주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나라에서 인권존중국가로의 전환의지를 담아 탄생한 국가인권기구를 말한다. 필리핀과 남아공이 대표적이며 라트비아 등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나라의 경우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근절은 모든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기 때문에 관련입법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남아공의 관련법에는 국내법이 마땅치 않을 경우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의 하나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의 관련법에는 인권위원회와 다양한 국가권력기관과의 정례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입법례도 사실은 이들 이행기형 국가의 입법례이지 차별행위만을 염두에 둔 호주 등 선진국형 입법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들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조건 혹은 높은 수준에서 민주화 이행기를 맞이한 나라가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이행기형 입법례를 남겨야 할 엄연한 국제적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성립 배경

1980년대 중반 이래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동구권등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가 붐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알리바이 인권기구도 양산되었다. 실효적인 인권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또한 목적을 가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널리 공감되었다. 이에 유엔인권센타는 1991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파리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워크샵’을 개최하여 파리원칙을 기초한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78년에 채택한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파리원칙은 1992년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와 93년의

유엔총회 결의를 거치면서 권고적 효력을 지닌 국제법원칙으로 승인된다. 1991년에 와서 파리원칙이 제정된 국제적 배경으로는 첫째, 국제인권규약이 1976년부터 발효하여, 개별국가 차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둘째, 그 결과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지만 대부분 관할과 권한이 미흡하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 셋째, 특히 1986년의 필리핀을 위시해 80년대 중후반에 불어닥친 아시아, 중남미의 민주화 바람과 90년대 초 동구권 등 사회주의국가들을 휘몰아친 체제전환 바람으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체제전환기 국가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상세한 지침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95년에 나온 것이 핸드북이다.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원칙과 기준을 제정하여 기존 국가인권기구의 강화를 도모하고 신규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을 지원함으로써 날로 발전해가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유엔인권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이 그간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파리원칙과 핸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5.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구성과 내용

파리원칙 자체는 단출하다. 그러나 이에 입각하여 95년도에 유엔인권센터가 펴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강화에 관한 핸드북'("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핸드북)에는 훨씬 자세하고 체계적인 해설과 유용한 권고가 붙어있다. 파리원칙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핸드북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원칙은 권한과 책무, 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활동방법,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특칙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편 핸드북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제는 국가인권기구의 배경과 개관, 국가인권기구의 실효성 보장 요소,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교육, 대 정부 조언과 자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이다.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관련하여 파리원칙은 '최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련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권고, 제안을 낼 수 있으며,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성격과 한계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 구성과 권한에 대해 다양하기 그지없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추상적 지침만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원칙이나 핸드북이 이상적 혹은 모범적 인권기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구체적 입법의 청사진이 되기에는 너무 소략하고 유연하다. 실제로 구체적 입법은 각국의 구체적 사정, 곧 정치,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에 일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기본 전제를 이룬다. 그럼에도 파리원칙과 핸드북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제사회의 양식과 탁견이 적지 않게 녹아있음을 알게 된다. 최소한의 기준이긴 하지만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권고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형은 관찰대상이 너무 좁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 후진국형은 독립성이 떨어지며, 남아공과 필리핀 등 민주화 이행기형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막연한 기준과 권고에 지나지 않는 파리원칙과 핸드북조차 여전히 일반적 지침으로 유효하고 유용하다.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새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 뿐 아니라 이미 활동중인 국가인권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핸드북의 정식명칭이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에 관한 핸드북”으로 붙여진 데서도 잘 드러난다.

최소한의 추상적 기준이라는 불가피한 한계 외에도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결함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결함은 파리원칙과 핸드북이 인권위원회 근거법령의 입법과정에 대한 지침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과정과 절차가 내용과 실제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인권기구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이 웅변하고 있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권위원회 근거법령의 입법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국제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요즘에는 입법과정에 대한 일정한 국제적 지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단순히 외교용이나 장식용으로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른바 ‘알리바이 인권기구’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파리원칙이나 핸드북에서 민주적 참여와 공개적 논의의 보장이 최소한의 절차적 지침으로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혹독한 인권침해를 겪

은 끝에 우여곡절을 거쳐 간신히 민주화 이행기의 초입에 들어선 국가들이 부닥치는 독특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의 요구라든가 독재정권 아래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일반적으로 왜곡된 국가부문의 무게, 특히 공안기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파리원칙에는 현재 부칙(additional principles)의 형식으로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최소한 민주화 이행기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에 독특한 부칙도 채택되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다.

7. 파리원칙과 핸드북에 비추어본 정부안의 문제와 한계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인권법안은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한대로 국제기준, 곧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기준과 권고에 부합하는가? 몇가지 대표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성격과 위상: 특수법인이나? 국가기관이나?

핸드북에는 국가인권기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절이 있다. 법무부는 이 구절을 가장 으뜸가는 특수법인 정당화 논거로 애용한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의 인권위원회는 법인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경우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격과 지위가 한국판 특수법인과 같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우선 이들 나라 인권위원회에는 이사회, 정관, 등기와 같이 한국식 법인제도에 고유한 장치가 없다. 또한 이들 나라의 인권위원회 직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식 민간법인의 직원과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환으로 위원회가 자체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성격은 주무부서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한국식 특수법인이 아니라, 법인격을 지닌 독특한 국가기관으로 이해해야 타당할 듯하다. 한국의 현행법상 이들과 가장 근접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 싶다.

국가기관으로 해서는 안되는 여타의 논거는 더욱 박약하다. 우선 관료주의가 걱

정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라면 법원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동위원회도, 여성특위도 모두 특수법인으로 바뀌어야 옳다. 물론 관료주의에 몰들지 않도록 인권위원회 나름의 기풍과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국정홍보처와 중앙인사위를 국가기관으로 신설하고 국민권리구제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신규 국가기관으로 제안한 현 정부의 입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주장이다. 예산 타령은 더욱 그렇다. 민간 기부금을 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이 낫다지만 정작 누가 얼마나 기부금을 낼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인권보장처럼 중요한 공무를 기부금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 설립해야 옳다. 첫째, 인권보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기존 국가기관의 흠과 결함을 메꾸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둘째, 남아공,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위원회를 헌법으로 설치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파리원칙과 핸드북에도 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헌법이나 법률에 뒤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헌법 개정시에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할 경우 민간특수법인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셋째, 종속의 법형식인 특수법인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원회에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

나. 독립성: 특수법인 형태와 독립성의 요구는 양립가능한가?

핸드북은 독립성의 요구를 재정, 구성, 운영, 임면등 다양한 차원에서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만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법인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특히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상 주무부서인 국가기관에 대한 종속과 보조의 조직 이상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주무부서는 특수법인의 설립과 구성, 조직과 인선, 예산과 업무 전반을 통제,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기에 법무부가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설계한 이유는 명백하다. 인권위를 산하기구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법무부의 통제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특수법인으로 있어도 법무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인권위 예산과 관련해 법무부는 인권위의 예산요구서를 제멋대로 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의견마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인권위는 그대로 따르기 쉬울 것이다. 법무부의 사실상 영향력이 큰데다 법적으로도 인권위는 법무부의 간접적 통제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대통령령의 제정, 설립위원의 추천, 최초 정관의 인가, 업무내용의 통보, 종합인권계획서의 수립 등을 통해서 인권위의 주무부서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령과 정관을 통해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정할 수많은 사항들중에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일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마땅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특수법인 형태와 독립성을 포함한 실효성의 요청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 구성: 구성의 사회화나, 구성의 고위화나?

파리원칙과 핸드북이 규정하는 인권위원회 구성원칙은 정치적, 사상적 다원성과 사회적 다양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있는 다양한 사회세력이 다원주의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민간인권단체, 노동조합, 유관직능단체(법조, 의료, 언론, 과학 등)의 대표자, 철학 및 종교 사조의 대표자, 대학 및 전문가들의 대표자, 의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정부부처의 대표자는 자문이나 참관을 위해 심의과정에만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파리원칙에 따를 경우 구성은 철저하게 사회화한다. 여기에는 국가고위관료 출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행기 국가의 경우 국가부문에서 성장한 이들은 대체로 권력지향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부패해 있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듯 구성을 사회화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등 3부 수장이 3인씩 동등하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추천인의 격을 최고로 높임으로써 피추천인의 격도 덩달아 높여놓은 셈이다. 다만 추천위원회나 검증절차는 없다. 정치적 다원성에 대한 배려는 국회 몫 중 야당에 할애될 1인으로 그친다.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을 3인 이상 임명하게 한 조항으로 끝난다. 어떠한 사회적 협의 의무도 배제한 이런 장치로는 심중팔구 정치색이 짙은 권력지향적 인사나 사법관료주의에 순응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정부안에 따를 경우 인권위원의 고위층화는 성공할 지 몰라도 인권위원 구성의 사회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인권위원회는 속성상 정권의 지배나 장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에서 출발하도록 하자. 이른바 정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에 그쳐야 옳다. 대법원장의 추천권도 배제되어야 한다. 대신 인권단체, 노동조합, 변호사단체, 대학 등이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 의미의 추천권을 가져야 옳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권보장업무와 관련있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파리원칙에 열거된 바에 따라 추천단체를 확정하여 추천권을 주는 방식인 데 전자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준사법적 관할대상: 8가지 인권침해범죄행위냐, 인권 일반이나?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인권위의 권한이 최대한 광범위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적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진정대상도 시민정치적 인권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인권에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모든 인권이 국제법상 동등하고 불가분의 위상을 갖기 때문이며 사회경제문화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기록과 조사가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현실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헌법상의 기본권 일반, 비준한 국제조약에 보장된 인권 전반, 혹은 시민정치적 인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안처럼 준사법적 관할대상을 차별행위 외에 수사, 교정, 복지 시설 직원이 저지르기 쉬운 8개의 형사범죄행위로 한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형사범죄 조사는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의 본령이지 인권위원회의 본령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인권위원회에 수사의뢰와 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위원회는 국내법상 형사범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회색영역의 사건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의 제한적 열거주의로 말미암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기준을 발전시킬 자연스런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었다.

마. 권한과 기능

정부안에 빠져있는 기능 중 하나만 지적해보자. 핸드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권관련재판에 의견서를 낼 권한을 매우 중시한다. 인권기구는 이 권한 행사를 통해

법원에 해당 사안의 인권 관련 함의 및 관련 인권기준을 알려줄 수 있다. 사문화된 국제인권조약을 살아있는 법, 집행되는 법으로 만드는 데 이 권한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호주 등의 예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안에는 이 중요한 권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조사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어떤 경우든 진정내용이 근거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지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법적 권한은 있어야한다는 전제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사에 필요한 공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관련 정보의 제출을 강제할 권한, 청문에 소환할 권한, 증인에 대해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하면 누구든지 청문할 수 있는 권한,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선서하에 구두 혹은 문서로 증거를 수리할 권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징구할 권한 등이 그것이다. 정부안에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많다.

바. 구제결정의 실효성: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이냐?

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쥐도 무방하다는 것이 파리원칙과 핸드북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시 강조하거나 파리원칙과 핸드북은 국가인권기구의 시정명령권 보유에 대해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시정명령권을 줄 경우 인권침해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인권기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권을 줄 경우 제2의 헌법재판소화가 우려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밀려 정부안에는 시정명령권이 없다. 그러나 시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복하여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최종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와 달리 인권위원회는 고작 전심의 기능을 할뿐이다.

8. 결론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를 향해 열려있는 국민국가의 창이다. 그렇기에 인권위원회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관련 국제인권법을 폭넓고 꼼꼼히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원회법안을 성안하면서 정부가 파리